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조기 진단검사를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지원대상

□ 다음 조건(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노동자

① 2020년 6월 4일(목)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성남시에 주소지를 둔 내국인 및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로

② 6.4(목) 이후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코로나19 증상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통보한 확진자 방문 다중 이용시설 이용자에 한해 무증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상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신고된 자)

③ 검사결과(음성)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④ 주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취약노동자

1) 단시간노동자 : 편의점, 음식점, 주유소 등 단기알바 등

2) 일용직노동자 : 건설노동자, 행사도우미, 가사도우미 등

3) 특수형태노동종사자 : 택배기사, 대리기사, 쉐어링서비스,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25조('20.7.1.시행기준)에 해당되는 특수형태노동종사자

4) 요양보호사

단, 기간제, 파견, 용역 노동자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및 일용직노동자에 해당될 경우 지원

□ 코로나19 검사자 중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여부

구 분	확진자	의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해외 방문력 있을 경우	② 집단발생 역학적 연관성 있을 경우	③ 의사소견 있을 경우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대상	X	X	○	○	○

※ 단, 조사대상 유증상자 중 자가격리 의무대상자일 경우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제외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이 나타난 자

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2 신청 및 접수 (※ 경기도내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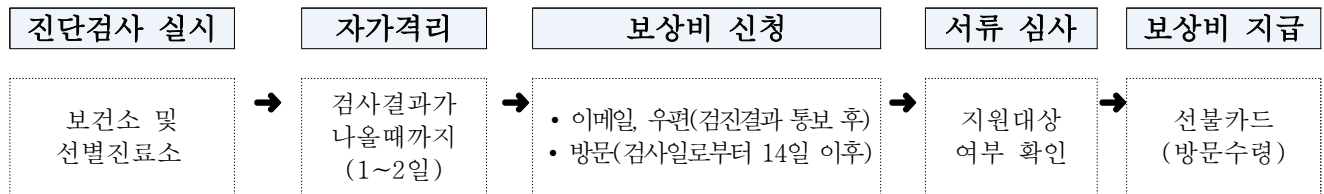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또는 대리 신청 가능
단, 지원금(선불카드) 수령은 본인만 가능

☐ 신청기간: 2020.6.15.(월) ~ 12.11.(금)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검사결과가 나온 이후 신청 가능하며, 방문(접수)은 진단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 신청가능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접수(이메일/우편) 이용

방법	주 소	비 고
① 이메일	snlabor@korea.kr	
② 등기우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997,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우)13437	
③ 방문	성남시청 고용노동과(서관 7층)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

- ① 신청서 [서식1]
- ② 자가격리 이행 및 보상금부정수급 관련 협약서 [서식2]
- ③ 개인정보 이용·제공 등 활용 동의서 [서식3]
- ④ 주민등록초본**
- ⑤ 자격확인증빙서류, ⑥ 신분증*(수령방문 시 지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는 주민등록초본 없이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거소증)만 인정

※ 자격확인 증빙서류

고용형태	증빙서류
주40시간 미만 단기간 노동자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이 없는 경우 단시간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단시간근로 입증자료(예시) - 사업주가 발급한 단시간근로 확인서 - 사업주가 작성·보관하는 출퇴근기록부 - 기타 단시간근로 입증자료
일용직 노동자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이 없는 경우 일용직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일용직근로 입증자료(예시) - 사업주가 발급한 일용직근로 확인서 - 사업주가 작성·보관하는 출퇴근기록부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고용·산재 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 퇴직금적립내역서(건설근로자공제회) - 기타 일용직근로 입증자료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용역·위촉·위수탁·대행계약서 사본 또는, 위 계약서가 없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특수형태노동종사 입증자료(예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용역·노무비)지급내역서 - 노무·용역제공사실 확인서 -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대리은행내역서 - 기타 특수형태노동종사 입증자료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사본

3 지원대상 결정 및 지급

☐ 지원대상 결정

- 신청서 접수 후 지급 여부 심사·결정 및 지원금 지급
(보건소의 진단검사자 확인 절차가 있으며, 서류미비 시 보완 요청)
※ 확진자 및 의사환자, 자가격리자통지서수령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 지급금액: 1인 1회 23만원

※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중복수령 불가,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급방법: 선불카드(신한체크카드)

«선불카드(지역화폐) 사용기간 및 사용제한»

- ▶ (사용기간) 수령일로부터 3개월 (단, '20.12.31 일괄사용 마감)
- ▶ (사용조건)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시(성남시)에서만 사용 가능
- ▶ (사용제한) 사용기간 경과시 차감 불가, 미사용액 환수, 연간 매출 10억원 초과 업체,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편의점 등은 사용 제한

☐ 수령방법: 본인만 가능(※ 신분증 지참)

☐ 심사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지급 중지·환수할 수 있음

4 기타 안내사항

☐ 문의전화

-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031-729-8541~5

☐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가능

(의료진 소견 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보상금 지원대상이 아니며 진단검사비도 본인이 부담)

☐ 검사결과(음성)가 나온 이후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신청 가능

☐ 신청 또는 카드수령 방문 시 반드시 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 가능

[서식 1]

코로나19 관련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	-----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	④ 연락처 :
⑤ 고용형태 : [] 주40시간미만 단시간노동자 [] 일용직노동자 [] 특수형태노동종사자	
⑥ 세부직종 :	

2. 신청 내용

① 검진일 : 2020년 월 일 (검진기관 :)

② 자가격리 이행일 : 2020년 월 일 부터 월 일 까지

상기한 바와 같이 「코로나 19 관련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	공 통	① 신분증 사본 ② 주민등록 초본 ③ 개인정보 이용·제공 등 활용 동의서 ④ 자가격리 이행 및 부정수급 관련 약속서
	고 용 형 태 증빙	①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②용역·위촉·위수탁·대행계약서 사본 그 외 입증자료 < 그 외 입증자료 예시 > (단기간근로자) 사업주가 발급한 단시간근로 확인서, 사업주가 작성·보관하는 출퇴근기록부, 기타 단시간근로 입증자료 (일용직근로자)· 사업주가 발급한 일용직근로 확인서, 사업주가 작성·보관하는 출퇴근기록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고용·산재 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퇴직금적립내역서(건설근로자공제회), 기타 일용직근로 입증자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용역·노무비)지급내역서, 노무·용역제공사실 확인서, 강사 등 재직·경력증명서,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대리운행내역서,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 입증자료
카드번호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자가격리 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협약서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지원을 위한 다음 사항을 협약합니다.

1. 자가격리 이행에 관한 확인서

-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지원이 협약인의 자가격리 이행 준수를 조건으로 지급됨을 확인하며, 검사일로부터 검사통보일 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보상금 부정수급에 관한 협약서

-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을 것을 협약합니다.

격리기간동안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지급된 보상금의 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 부가금이 추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율 >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500%
- ②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③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100%

2020년 월 일

협약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주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처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 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부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경기도, 성남시, 신한은행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주소, 지급액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처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 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부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처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 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부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